

유다예 관세사 T/070-4353-1594 메일/dyyoo@esein.co.kr

#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20.01.08

# 『관세법』일부 개정 안내

### I. 개요

금년도 『관세법』조항 일부가 변경 및 신설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Ⅱ. 주요사항

### 1. 개정 사유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소비자의 편의 제고
- 징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 수출입 중소·중견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2. 개정 내용

#### 1) 연대납세의무자 추가를 통한 징수 효율성 확대

- □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자 추가 (§19조 제5항 및 §270조 제1항)
  -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 수령 및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 이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관세포탈죄 적용

#### 2) 납부지연가산세 통합을 통한 납세자의 혼란 방지

- □ 가산금과 가산세의 일원화 (§41조 및 §42조)
  -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유다예 관세사 T/070-4353-1594 메일/dyyoo@esein.co.kr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20.01.08

# 『관세법』일부 개정 안내

## Ⅱ. 주요사항

### 2. 개정 내용

- 3) 소비자의 편의 제공 및 제세 부담 완화
- □ 특정물품의 면세 등 물품 추가 (§93조)
  - 보석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정물품 면세에 보석의 원석 및 나석 포함
- □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 관세 환급 (§106조의2)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 □ 입국장면세점 설치 근거 신설 (§196조 제1항)
  -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외국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함
- □ 수출 검사 대상 물품 수수료 면제 (§247조 제3항)
  -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통 실태 조사 조항 신설 (§266조 제4항)
  -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유통 실태 조사를 서면 실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한 경우 조사 결과 공개 가능
-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통고처분 면제 (§311조 제8항)
  -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 가능



유다예 관세사 T/070-4353-1594 메일/dyyoo@esein.co.kr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20.01.08

# 『관세법』일부 개정 안내

## Ⅱ. 주요사항

### 2. 개정 내용

### 4) 징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 □ <u>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규정 추가 (</u>§116조의4)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범위 내 감치 가능
  - 1) 관세의 3회 이상 체납,
  - 2)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 3) 체납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
  - 4)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 □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근거 마련 (§116조의5)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밀수출입 범칙물품의 임의적 몰수 대상 전환 (§282조 제2항)
  -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 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
-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84조의2)
- 범칙 사건에 관한 조사 시작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및 송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유다예 관세사 T/070-4353-1594 메일/dyyoo@esein.co.kr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20.01.08

# 『관세법』일부 개정 안내

## Ⅱ. 주요사항

### 2. 개정 내용

- 5) 납세자 권리 및 국내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
  - □ 권리구제 절차 명확화 (§118조 제6항)
  -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허용
-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118조의2, 4)
  -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두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설정
- □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및 소비자 보호 (§222조 제1항)
  -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등록
- □ 손실 보상 확대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246조의2 제1항)
  -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 검사 범위를 수출·수입·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
- 6) 수출입 중소기업 · 중견기업 지원
- □ <u>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 지원(§173조 제3항 및 §329조 제6항)</u>
-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의 경우 국가 예산 범위 내 검사 비용 지원
-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다예 관세사 T/070-4353-1594 메일/dyyoo@esein.co.kr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20.01.08

# 『관세법』일부 개정 안내

## Ⅱ. 주요사항

### 2. 개정 내용

#### 7)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규정 명확화

- □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기준 법률 구체화 (§125)
  -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 보정방법 구체화 및 명확화 (§123조 제2항)
  -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 제출하여 보정하거나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보정사항을 구술하고 이를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 가능하도록 함
- □ 불복청구 가능 방법 추가 (§129조의2)
  - 관세정보통신망 등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특허수수료 기준 마련 (§176조의2 제4항)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하는 경우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
- □ 시행령 규정의 법률 승격화 (§42조의2)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 사유와 금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관세법』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신구조문대비표

. 「관세법」

<b>관세법</b>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b>관세법</b>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u>가산금·가산세</u>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③ 이 법에 따른 <u>가산금·가산세</u>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u>가산세</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납세의무자) ① ~ ③ (생 략)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 <u>가산급·가산세</u>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 <u>가산</u> <u>금·가산세</u>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1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1)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2)2)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 <u>가산금·가산세</u>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4 0 (1) =1	
1. ~ 3. (생 략) ① 이 법에 따라 관세· <u>가산금·가산세</u>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 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①
8· ⑨ (생 략)	8· (9 (현행과 같음)
①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	⑩

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 4. (생 략)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 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①	
②·③ (생 략)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u>관세·가산금</u>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 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2조	
제38조의2(보정) ① ~ ④ (생 략)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정수하 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 게 <u>정당</u>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우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 이라 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 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u>부족세액</u>

법제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②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압정한다)
<u>&lt;신 설&gt;</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 설>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lt;신 설&gt;</u>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신 설>

<u>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u>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

<신 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 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 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 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 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37조제1항제3 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 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4. 제 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 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 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5. 제38 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 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 의 1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7. 제124조 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 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 (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 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 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u>가산금·가산세</u>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 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 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 다.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있다	②
③·④ (생략) 제40조(기내하그기사그) 제괴가 이 제4C Z 에 따가 되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b>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02조/투저므프이 더儿 드\
세93또(국영물품의 전세 S) 나는 각 오의 이드 아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세90조(국경돌답의 단세 중)
에당하는 철범의 무겁을 때에는 그 전체를 전체할 수 있다.	
<b>以口</b>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
세90소(어행사 유내늄 및 이사물늄 등의 김전제) ① (생 략)	세90조(여행자 유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김단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	2
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u>관세</u> 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u>관세</u>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
<b>제99조(재수입면세)</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b>제99조(재수입면세)</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 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l =l (vl =l)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 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생 략)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 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 조 및 제106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②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 한 관세를 환급한다.
<u>&lt;신 설&gt;</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 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② (생 략)	<b>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b>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u>필요할 때</u>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u>사항을 주무부</u> <u>장관에게 위탁</u> 할 수 있다.	③
	-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 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 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재위임하 거나 재위탁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생 략)	<b>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b>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 세자에게 내주어야 <u>한다</u> .	②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4조의2(장부·서류 등의 보관 금지) ① ~ ③ (생략)	제114조의2(장부·서류 등의 보관 금지)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         \Psi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납세자의 동의를 받아</u> 한 차 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u>제118</u> 조의4제1항에 따른 <u>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u>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u> 위하여 관세청에 <u>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u> (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16조의4(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납한 경우 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

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⑤ (생 략)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제123         조, 제126조, 제128조제5항 · 제6항 및 제130조를	재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관세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용한다.	<u>제127조제2항, 제128조제5항·제6항,</u> <u>제129조의2</u>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관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1. 세관공무원 2. 세관공무원으로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관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민 담당관은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대통

관 및 담당관의 자격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1 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을 심의한다. 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2. 관세	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및 권한을 가지며, 납세자보호 관 및 담당관의 자격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1 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을 심의한다. 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2. 관세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관공무원 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조사 일시증지 또는 중지 요청 4. 제114조의2 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5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또는 번경 요청 2.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변경 요청 2.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결정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 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납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원으로 구성한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관 납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의 수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발대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등에서 해당 세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께 전체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상대 전체정에 위원은 관세 법률·제정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약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약에 전문하나 목계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약단 에 전문하나 목계 경험이 공부한다. 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나 목계 외의 용도로 사서는 아니 된다.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서 제목되거나 회의하여야 한다. 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회서 제목되거나 회의하여야 한다. ⑩ 납세자보호위 회 시원은 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서 제목되거나 회의하여야 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무원은 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장이 있다고 인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사 기관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단,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바 한다를 둔단,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2. 관세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증지 또는 중지 요청 3.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일시증지 또는 중지 요청 4. 제114조의2제상당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5. 그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또는 변경 요청 2. 그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권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모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된다. 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인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된다. 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된다. 1. 계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관리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안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장이 임목하는 가람 등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전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점막 상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최되거나 회괴하여야 한다. 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원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원된 사제자보호위원회의 의원인 사례자보호위원회의 의원인 사례자보호위원회의 의원인 사례자보호위원회의 의원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원인 사례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인 사례자보험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	<신 설〉

<신 설>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의 세관장(이 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118조의4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 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18조의4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 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8조의4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 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 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관장의 결정 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 장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 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 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18조의2제2항에 따 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 회의 심의 전까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조사의 일시중 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 는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요청 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세관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 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 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① (생 략)

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 ②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 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 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 \_\_\_\_ 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 로써 보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 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결
	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
	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
	<u>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실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u>다.</u>
<u>&lt;신 설&gt;</u>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관세청장
	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
	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del>                                    </del>
	하지 못한다.
<신 설>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
	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
	'심판성무시'를 세울하는 경구에는 단세성성 또는 소세    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
	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32조(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b>제132조(이의신청)</b>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	
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	<u>利127</u>
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	조, 제128조 및 제128조의2
로 본다.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36조(출항절차) ①·② (생 략)	<b>제136조(출항절차)</b>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u>다.</u>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외국무역선 또는
	<u>외국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u> 제2항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2용에 따는 식새물품의 극독를 물용이가 신청 선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	
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	<u>다.</u>

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 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 런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 1.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 2. (생략)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1호부터 제7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야 한다.

-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삭 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 ③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 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 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 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 1. 제4항- -
- 2. (현행과 같음)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 의 자격이 있다.

<삭 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 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 ④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3 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 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u>하게 된 경우</u>
2.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u>2. 사망한 경우</u>
<u>&lt;신 설&gt;</u>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u>&lt;신 설&gt;</u>	⑦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제16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b>७</b> (	② (연행과 실급)
제173조(세관검사장) ①·② (생 략)	제173조(세관검사장) ①·② (현행과 같음)
<b>제173조(세관검사장)</b>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 취·운반 등에 필요한 <u>비용</u> 은 화주가 부담한다. <u>&lt;단</u> <u>서 신설&gt;</u>	
<b>제173조(세관검사장)</b>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 취·운반 등에 필요한 <u>비용</u> 은 화주가 부담한다. <u>&lt;단</u>	제173조(세관검사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 건설 · 보세판매 · 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 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 출하거나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 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 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 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 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① 보 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 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 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세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 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 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 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 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 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 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 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

도하여야 한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 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③
④·⑤ (생략)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 장 또는 세관장은 <u>제246조에 따른</u> 세관공무원의 적 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한다)하여야 한다.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이 법에 따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 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u>한다</u> .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④ <u>관세청장은</u>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	
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
	제247조(검사 장소) ①·② (현행과 같음)
제247조(검사 영도) ① · ② (영 탁)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 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u>보세창고</u> 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b>M247至(名本 名至)</b> ①・② (世場界 崔吉) ③
H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u>
<신 설>	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 과 다른 경우
<u> &lt;신 설&gt;</u>	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b>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b>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

	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 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b>제270조(관세포탈죄 등)</b>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u>한 자</u>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u>한 자(제19조제5항제</u>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	<u> 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u>
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기계계계기가 서울스 마리카 시키계 카메카 만나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1
수입한 자	
	수입한
	<u>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u> 함한다)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 ~ 5 (W <del>c</del> )	② ~ ⑤ (현행과 같음)
	<b>제276조(허위신고죄 등)</b>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65조제2항</u> 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b>제277조(과태료)</b> ① ~ ③ (생 략)	<b>제277조(과태료)</b>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40 조제5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 6. (생략)  ⑤ ·⑥ (생략)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① ~ ④ (생략)  ⑤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취소한다.	2
<b>제282조(몰수·추징)</b> ① <u>제269조제1항</u> 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282조(몰수·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 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 한다)
② 제2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 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u> </u>	3. '페기물산더입' 제2조제1모두터 제3모까지의 # 정에 따른 폐기물
<신 설>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품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제311조(통고처분)</b> ① ~ ⑦ (생 략)	<b>제311조(통고처분)</b> ① ~ ⑦ (현행과 같음)
<u>&lt;</u> 신 설>	<ul> <li>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따라야 한다.</li> <li>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li> <li>① 제8항에 다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li> <li>1.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li> </ul>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8조(청문)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u>제165조제4항에 따른</u>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 정지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② (생략)	<b>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b>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3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u>제165조제2항</u> , 제209 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 다)·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 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심사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29조제2항부터 <u>제5항</u> 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u>제6항</u>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 람	8
가. · 나. (생 략)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다 <u>관세</u> <u>정보위원회</u>
라.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라.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마.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마. 제124조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바.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원회	바.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u>사.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u> 원회
아.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으.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u>&lt;신 설&gt;</u>	자.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u> </u>	차.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